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1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4.

도 하 석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도하석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 방식과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 보임 및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고,
- 안 제6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 안 제8조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 시 최다선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 방식과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024
----------	----------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도하석 박정환 이선주
고명욱 정순옥 황국주
김정희

1. 개정이유

- 법령 체계에 맞추어 불필요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 방식과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임 및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안 제5조)
- 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안 제6조)
- 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최다선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되도록 명시함(안 제8조)
- 라.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에 따라”로 하고, “(이하 “의회”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임”을 “보임 또는 개선”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을 “소속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거자, 최다선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을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④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u>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의회</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생략) ② <u>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6조(상임위원장) ① (생략) ② 상임위원장은 <u>상임위원</u>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④ (생략)</p> <p>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생략) ② <u>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거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u>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현행과 같음) ② <u>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제6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u>소속 상임위원</u>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현행과 같음) ② <u>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거자가, 최다선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u></p>

③ (생략)

제11조(부위원장)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생략)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부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④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